#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(박덕흠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7837

발의연월일: 2025. 1. 24.

발 의 자: 박덕흠 · 최은석 · 이헌승

김성원 · 서천호 · 장동혁

이양수 • 박수민 • 고동진

성일종 • 안철수 • 박상웅

강대식 • 박정하 의원

(14인)

#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서는 특수학교의 학급 및 각급학교의 특수학급 설치에 관한 인원 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며, 중복장애 또는 중증장애를 가진 특수교육대상자가 배치된 학급의 경우 교육감이 2분의 1의 범위에서 학급 설치 기준을 하향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.

그런데, 중복장애 또는 중증장애를 가진 특수교육대상자가 포함될 경우 학교에 따라서는 특수교사들에게 과중한 업무 부담이 지워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, 학교별 상황을 고려하여 특수학급 설치 기준이 탄력적으로 조정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.

이에 두 가지 이상의 장애를 지니면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특수교 육대상자가 배치된 학급을 운영하는 특수학교 또는 각급학교의 장이 교육감에게 해당 학급 설치 기준의 하향 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으로써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교육의 질을 향상하려는 것임(안 제27 조제3항 신설).

#### 법률 제 호

##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27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특수학교 또는 각급학교의 장은 두 가지 이상의 장애를 지니면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특수교육대상자가 배치된 학급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교육감에게 제2항에 따른 학급 설치 기준의 하향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.

#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
제27조(특수학교의 학급 및 각급	제27조(특수학교의 학급 및 각급		
학교의 특수학급 설치 기준)	학교의 특수학급 설치 기준)		
①・② (생 략)	①·② (현행과 같음)		
<u>&lt;신 설&gt;</u>	③ 특수학교 또는 각급학교의		
	<u>장은 두 가지 이상의 장애를</u>		
	지니면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		
	특수교육대상자가 배치된 학급		
	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판단되		
	는 경우 교육감에게 제2항에		
	따른 학급 설치 기준의 하향		
	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.		
③ (생 략)	<u>④</u> (현행 제3항과 같음)		